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대폭 확대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농·어업,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의 기초가 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적용 대상이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대표적인 예로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농·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등 10개 업종과 100명 이상인 봉제의복 제조업, 보건업 등 6개 업종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그동안 이와 같은 규정은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만 국한돼 있었다. 그만큼 정부에서는 산안법의 적용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업종도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등 유해·위험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안전보건교육 제도 적용 대상도 농업, 어업, 임대업, 수리업 등 12개 업종이 추가됐다. 특히 특별교육은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을 할 때 시행되는

것을 감안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해서는 현실을 고려해 개정했다. 도급사업이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등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 사업주는 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교육 지도·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유해·위험물질의 취급량, 유해·위험작업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정안전관리(PSM),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특별교육 등은 기존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늘렸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해·위험도가 높을 경우 산재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는 야간작업이 피로 및 스트레스 증가로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및 압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야간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업무 배치 후 6개월 이내, 그 이후에는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한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 가운데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특수건강진단과 관련된 개정 내용은 △300명 이상 사업장-2014년 1월 1일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2015년 1월 1일 △50명 미만 사업장-2016년 1월 1일 등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고용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근로감독관 전담 관리제가 확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업종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8월 7일 발표 했다. 이는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울산 SMP 물탱크 파열사고, 방화대교 램프 상판 낙하사고 등 건설분야에서 중대 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PSM 사업장 등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위주로 운영되던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가 건설업종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우선적으로 2,000개소의 건설현장에 대해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밀착 관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부는 재해율이 낮아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던 일부 건설업체에서 재해가 증가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점을 감안,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앞으로 확인 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고용부는 자율안전관리

대상업체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최근 공공 발주공사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 기관 및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의 경우 공공기관별 산업재해 현황(재해율,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에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의 산재예방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이 우기 돌발사고, 안전상 긴급한 조치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해당기간 만큼 공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건설 현장의 공기단축이 연장·심야작업, 안전 수칙 미준수 등 무리한 작업을 유발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된 데 따른 보완조치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최근의 건설 현장 대형사고는 안전에 대한 적은 투자, 발주기관 및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 공기압박에 따른 무리한 작업 강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안전조치 및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재해예방 위한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개발·보급 절실

올해부터 도입된 위험성평가의 우수

사례를 개발·보급하는 것이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산업안전 지도 감독이 재해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방향으로 개선·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의견들은 8월 16일 안전보건공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업장 재해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개진됐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취지에 걸맞게 간담회에는 백현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정진우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을 비롯해 노사 대표자, 각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먼저 산업안전 지도감독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동하 코카콜라음료(주) 안전파트장은 “사실 현장에서는 현행 지도감독을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특히 지도감독 후 10~20일 내에 개선완료 및 보고를 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때문에 1회성에 불과한 개선 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속적인 재해예방 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지도감독 후 개선의 난이도, 소요기간, 예산확보 등을 고려해 1~3개월 내 개선토록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호상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장 역시 “지도감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그래야만 지도감독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재해예방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변준혁 CJ(주) 안산공장 과장은 “기본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가장 기초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예를 들어 이들 사업장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선다면 재해예방에 큰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성만 동우화인켐(주) 부장은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우수사례의 개발 보급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서 부장은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려고 해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유하지 않고 있다”라며 “노사가 참여해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우수사례가 개발 보급된다면 자율안전관리체계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

